

사무직원 승진 내규

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4.22.		16		
2	2022.8.10.		17		
3	2023.2.27.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사무직원 승진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사무직원(행정직 및 기술직)의 승진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. <개정 2023.2.27.>

제2조 (승진의 적용) 직원의 승진은 제반요건이 구비된 후보자 중 정관상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시행한다.

제3조 (승진의 시기) 승진의 시기는 연 1회로 3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2.8.10>

제4조 (승진 소요년한)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로 <별표 1>에 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한 자라야 한다. 다만,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승진심사 및 기준) ① 승진심사는 직원 인사규정 제 16조 제 3항에 의한다.

② 직원 승진을 위한 기준은 직원근무평정세칙 제 6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시행하며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. <개정 2022.8.10>

③ 총장은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, 승진 임용자를 선정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2.8.10>

제6조 (승진임용의 제외)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에 있는 자

2. 직원인사규정 제22조 제4호에 의거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<개정 2013.4.22>

3.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본인의 능력으로 보아 상위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제7조 (승진임용) 주무처장은 이 내규에 따라 업무를 주관하고, 본 대학교 직원인사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<개정 2013.4.22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199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5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23.2.27.>

직 원 승 진 연 한

1. 행정직 및 기술직

구 분	최소 연한	시 행 일	비 고
8급 → 7급	4년	1995. 3. 1	
7급 → 6급	4년	''	
6급 → 5급	5년	''	
5급 → 4급	5년	''	
4급 → 3급	6년	''	
3급 → 2급	6년	''	
2급 → 1급	6년	''	

※ 본 규정 제 3조 개정에 따라 9월 승진대상자의 최초 상위 직급 승진을 위한 최소 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

2. <삭제 2022.8.10.>